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1

(2015. 10.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16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월)

## 4. 관계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및 제39조(국고 보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  
(생활문화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 제정이유 >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문화융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구의 시책과 장려사항, 사업대상 및 지원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문화예술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원방안과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및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가)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 나)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의 시책과 장려사항, 사업대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 문화예술 진흥과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법인·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안 제6조~제13조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1) 위탁대상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2) 위탁기간 :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
- 3)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원칙,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4)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 이내(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학계, 법조계, 재계의 민간위탁 전문가 : 1~2명
    - ②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2~3명
    -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 2명
    - ④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수탁자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6) 계약체결 :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의 취소사항 등
- 7) 지도·감독 :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 시정요구 등을 규정함

○ 동(同) 조례안은 2015.8.27.~9.16.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1.1일부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법을 또는 해당 조례 없이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고,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서도 「지방재정법」 제 17조 제4호에 따라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 안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에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 사업에 필요한 사업 비용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문화예술 진흥 및 사업 담당부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은 “경의선 책거리”, “아현 음악창작소”, “망원정터” 및 “광흥당” 시설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2015.9.24. 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2호의 문화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에 해당되므로,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同)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타법개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참 고 자 료

## □ 보조금 지원사업(2015년 기준)

구 분	대상단체	사업	비 고
사회단체 민간경상사 업보조	마포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삼개글짓기 대회, 역사문화유적탐방	
	마포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마포지부)	시화전	
	삼개울회 (대한시조협회 마포지부)	시조경창 및 공연	
백일장 행사 지원	마포타임즈, 마포신문사	여성백일장 사업	* 2016년부터 공모하여 지원
지역문화예 술축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2015</li> <li>· 제11회 와우북 페스티벌</li> <li>· 산울림소극장 30주년 페스티벌</li> <li>· 제15회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li> <li>· 2015 흥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li> <li>· 매직뮤지컬 퍼레이드</li> <li>· 제23회 흥대앞 거리미술전</li> <li>· 2015 성미산 마을축제</li> </ul>		지역축제 · 행사 공모 선정사업

## □ 민간위탁 대상 시설

대 상	내 용	비 고
경의선 책거리	· 2016년도 경의선 책거리 조성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 근거 마련 필요	
아현 음악창작소	· 2015.1.1~2019.12.31까지 (사)한국음악발전소 위탁 중 · 위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비에산
망원정터, 광흥당	· 위탁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	